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박충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5 발의연월일: 2024. 6. 3.

발 의 자: 박충권·김승수·이인선

조정훈 · 김성원 · 나경원

박준태 · 김선교 · 권성동

안상훈 의원(10인)

제안이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그 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경제, 산업과 일자리가 점점 더 수도권으로 집중됨에 따라 지역은 청년을 중심으로인구가 유출되어 가까운 미래에 소멸될 위기에 직면해 있음.

이렇게 위기에 처한 지역이 다시 활력을 찾고, 청년들이 지역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산업 경쟁력과 혁신의 원천인 과학기술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음.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 연구기관 및 기업의 연구 기능, 우수한 연구 인력 역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지역은 과학기술 역량이 부족하며, 여전히 정부 주도로 관련 정책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지역이 과학 기술에 관심을 갖고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따라서 지역의 연구 역량을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기업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에 정착함으로써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선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적인지원이 필요함.

이에 지역 주도로 지역에 특화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정부는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추진체계를 구축하며, 지역 산·학·연의 연구역량 강화 및 지역의 자생적인 연구생태계 조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시·도지사가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을 수립하고, 혁신 계획의 추진을 위해 정부가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 및 제6조).
- 나. 시·도지사가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을 수립하는 등 지역과학기술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투자를 촉진하고, 효율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이에 특화된 평가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2조).

- 라. 지역거점연구기관, 지역 대학 협력연구단을 지정하는 등 지역 공 공연구기관 및 대학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마. 지역기업부설연구소의 육성, 기업부설연구소의 지역 유치 및 지역 기업부설연구소의 공통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규정함(안 제 17조).
- 바.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집적단지 간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 실태조사·진단 및 평가·컨설팅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19조).
- 사.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인재양성 및 활용,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아. 지역 주도로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 자.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계 및 실태조사, 수요조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 지역과학기술정보를 생산하고. 유통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지역과학기술혁신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주도적, 자율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지역과학기술혁 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 여 국가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과학기술"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이하 "시·도"라 한다) 또는 공통의 기술적·산업적·경제적·사회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기술 및 이와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 2. "지역과학기술혁신"이란 지역과학기술과 관련하여 제4호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가 연구개발을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역량을 확보하고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지역에 유용한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
- 3. "지역공공연구기관"이란 지역에 소재한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

- 를 말한다.
-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나.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 관이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성을 인정하여 지정한 기관으로 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4.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란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를 말한다.
 -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 또는 기술대학(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
 - 나. 제3호에 따른 지역공공연구기관
 - 다.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 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 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또는 관련 법인·단체
 - 마.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 분야의 비

영리법인

-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학기술혁신 및 연구개발 ·사업화 촉진 등과 관련되는 법인 또는 단체
- 5. "지역과학기술인"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 구역 또는 공통의 기술적·산업적·경제적·사회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이학·공학 등의 분야와 이와 관련되는 학제 간 융합 분야(이하 "과학기술 분야"라 한다)에서 연구개발 및 기술혁신 활동에 중사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연구개발 및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하는 등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정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하고, 재정 지원 및 규제 완화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 ③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는 해당 주체가 수행하고 있는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사업 또는 활동을 연계하여 그 성과를 효과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여야 하며, 지역과학기술혁신 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역과학기술혁신 촉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지역과학기술혁신 추진체계

- 제5조(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의 특성 있는 혁신과 발전을 위하여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연
 계한 관할구역 내의 지역과학기술혁신계획(이하 "지역혁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
 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지역혁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과학기술혁신의 목표, 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 2.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의 발전과 혁신을 위해 중점 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기술(이하 "지역중점기술"이라 한다)의 설 정에 관한 사항
 -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투자 목표, 재원 확보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
 - 4.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의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6. 지역 내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사항
- 7. 연구시설·장비 구축 및 운영,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등 지역과학기술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8. 제1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육성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시·도지사는 지역혁신계획의 연도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시·군·구,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및 지역과학기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 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혁신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본 지침을 마련하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제출한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에 대하여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상충되거나 다른 시 ·도의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등과 중복·충돌하는 경우, 「국 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시·도지사에게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 정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6항의 요청을 받은 시·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과학 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⑧ 제5항의 기본지침, 제6항에 따른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의 조정 및 그 밖에 지역혁신계획과 실행계획의 수립과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6조(지역혁신계획의 추진 등) ① 시·도지사는 지역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 ② 정부는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혁신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조사·연구,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⑤ 시·도지사는 매년 지역혁신계획의 추진실적을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시·도지사의 혁신계획 추진실적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7조 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에 제출하고, 관할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분석 결과를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 ⑧ 그 밖에 지역혁신계획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지역과학기술 투자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주도로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 관련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재정 여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일정 비율을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여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효율적인 사업 관리를 위하여 시·도가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 및 시·도가 예산을 부담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를 달성한 시·도에 대

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⑤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 목표와 제3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관리하여야 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제8조(지역과학기술 중장기 투자 혁신 전략 수립) ①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 합계획 및 이 법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과 연계한 국가연구개 발사업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5년 단위의 지역과학기술 중 장기 투자 혁신 전략(이하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이라 한다)을 세우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지역 중장기투자혁신전략을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고자 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② 지역중장기투자혁신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국가연구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 2. 제12조에 따른 지역연구개발사업, 지역주도사업, 초광역협력 연구 개발사업 투자 효율화 방안
 - 3. 제24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 등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하여 필요한 전략적 투자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제9조(지역과학기술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에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지역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 1.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 및 실행계획
 - 2.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 3.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보 및 투자전략, 예산 배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 4. 지역과학기술혁신 기반의 구축 및 운영
 - 5.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주요 사항
 - ③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며, 위원은 지역과학기술 혁신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 촉한 사람이 된다.
 - ⑤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역위원회의 심의·조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10조(지역별 과학기술 전담기관)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혁신

에 관한 정책·사업의 기획 및 관리, 조사·연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역별 과학 기술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지역과학기 술혁신 주체 중에서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 ② 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5조, 제6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의 수립 및 조정, 추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 2. 제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위원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 3. 제12조에 따른 지역연구사업 및 지역주도사업 추진의 지원에 관한 사항
- 4. 제17조에 따른 지역기업연구소 육성 및 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 5. 제19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의 연계·협력 및 활성화의 지원에 관한 사항
- 6. 제20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의 지원에 관한사항
- 7. 제24조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의 지원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하는 사항
- ③ 전담기관은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담기관의 설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⑤ 전담기관의 설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이법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을 비롯한 지역과학기술혁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제도의 마련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와 각종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책·사업 컨설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 정책연구센터(이하 "정책연구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조사·연구, 데이터의 분석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컨설팅 등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책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④ 정책연구센터의 지정기준·절차, 운영 및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2조(지역연구개발사업 등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과 이법 제5조에 따른 지역혁신계획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중에서 지역과학기술 정책과의 부합 여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연구개발사업(이하 "지역연구사업"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연구사업에 대한 투자의 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등에 있어서 지역연구사업에 특화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평 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③ 국가는 지역연구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이하 "수도권 외의 지역"이라 한 다)에 소재하는 지역과학기술 관련 주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의 연구역량 강화와 특성 있는 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는 연구개발사업(이하 "지역주도사업"이라 한다)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 주도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사업에 대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초광역권의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 수 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초광역

협력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⑦ 제2항에 따른 평가, 제4항에 따른 지역주도사업 및 제6항에 따른 초광역협력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13조(지역 간의 과학기술 협력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 간의 지식·정보의 공유, 기술협력 및 융합 등을 위하여 지역과학기술인 및 지역과학기술혁신 주체 간 다양한 협력활동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이나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에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내용 및 투자분 담 등이 포함된 지역과학기술 투자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체결할 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필요한 예산의 편성 등 협약을 이행하고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의 수립 및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에 있어서 제1항에 따른 협약 을 반영할 수 있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협약의 체결, 내용 및 사업범위, 협약

체결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역과학기술혁신 관련 주체의 육성 등

- 제15조(지역공공연구기관의 육성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시·도에 소재하는 지역공공연구기관 가운데 지역거점연구기관(이하 "거점연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지역 내 연구개발, 연구인력의 활용 및 연구개발 성과의 확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한 원천,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
 - 2. 지역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문제의 해결
 - 3. 지역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
 - 4. 우수한 지역 연구인력의 양성 및 활용 촉진
 - 5. 연구시설 · 장비의 구축, 운영, 개방 및 활용 지원
 - 6.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산·학·연 협력연구 및 네트워크 운 영
 - 7.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 혁신을 위해 필요한 사업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연구사업 및 지역주도사업 추진 시

거점연구기관을 우선 고려할 수 있다.

- ④ 지역공공연구기관은 소재지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 기업과 협력연구 및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등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⑤ 거점연구기관은 매년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을 시·도지사와 협의 하여 수립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⑥ 거점연구기관은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을 위해 연수기회를 제공하거나 채용하는 등 소재하는 시·도의 이공계인력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⑦ 시·도지사는 거점연구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런하고, 이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8 제2항에 따른 거점연구기관의 지정 및 지원, 제5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지역 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 인력양성 등 지역 대학의 연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거점연구기관이 제15조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기초, 원천연구 및 연구인력 양성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거점연구기관이 소재하는 시 ·도의 대학에 협력연구단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 1. 지역중점기술과 관련된 기초 및 원천연구

- 2. 지역의 연구역량 확충을 위한 기초연구
- 3.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 4. 연구인력의 안정적 연구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
- ③ 제2항에 따른 협력연구단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지역기업연구소의 육성 및 유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법률」 제14조의2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기업 연구소(이하 "지역기업연구소"라 한다)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기술개발ㆍ기술 도입 및 도입 기술의 개량에 관한 조사ㆍ연구
 - 2. 신규 연구개발인력의 확보 및 재직 연구개발인력의 유지를 위한 교육훈련·연수 및 재정 지원
 - 3. 연구시설·장비의 공동 활용
 - 4. 특허 및 기술동향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석
 - 5. 그 밖에 지역기업연구소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수도권에 있는 지역기업연구소가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 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 원을 할 수 있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지역기업연구소가 직면한 공통의 기술문제 해결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을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 제18조(지역 내 산학연 협력의 촉진 등) ① 시·도지사는 거점연구기 관을 중심으로 관할 시·도 내의 산학연 간의 개방과 협력을 촉진 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연구성과가 지역 기업 및 산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협동 · 융합연구 및 기술개발
 - 2. 인력, 정보 등의 교류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 3. 연구시설·장비 등의 공동 활용 및 서비스 지원
 - 4. 기술이전, 연구성과의 검증, 산·학·연 협력 기술사업화 및 창업의 지원
 - 5. 연구개발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및 재교육
 - 6. 그 밖에 산·학·연 간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연 간의 개방과 협력을 위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획하여 수행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기존에 추진 중인 연구개발, 사업화 지원, 과학기술 인력양성, 연구시설·장비의 구축·활용 등의 사업을 연계하거나 통합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이 지역기업의 기술문제 해결과 기술 역량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장 지역과학기술혁신을 위한 기반 및 환경 조성

- 제19조(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 활성화 및 연계·협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과학기술 집적단지(이하 "집적단지"라 한다)를 활성화하거나 집적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1. 집적단지 내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 2. 집적단지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사업화 에 관한 사항
 - 3. 대학·연구소·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사업화에 관한 사항
 - 4. 연구장비·시설 등 기반의 구축·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5. 지역 산업 및 기술 분야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6. 집적단지에 입주한 대학·연구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확보에 관한 사항
- 7. 신기술·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제 및 제도의 개선 에 관한 사항
- 8. 주거, 교통, 교육, 문화생활 등 정주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
- 9. 그 밖에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연계·협력을 위한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리적으로 인접하거나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 및 기술 분야가 유사한 타 지방자치단체와 집적단지 간 연계·협력 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집적단지의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시 타 집적단지와 중복 여부 및 연계·협력 가능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지역 내 집적단지의 활성화 및 집적 단지 상호 간의 연계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실태조사, 진단 및 평 가, 컨설팅 등을 수행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그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
- ⑤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진단 및 평가, 컨설팅 등의 결과를 해당 집적단지의 활성 화를 위한 사업 및 정책 추진 시 고려하여야 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그 밖에 집적단지의 활성화 등에 관

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지역과학기술인 양성 및 활용 촉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과학기술의 변화와 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창의력 있고 다양한 재능을 가진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개발하고,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에 정착하여 지속적,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전주기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지역과학기술인의 중·장기적 수요 및 공급 전망의 수립
 - 2.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공급계획 수립
 - 3. 지역과학기술인에 대한 교육훈련, 재교육의 촉진
 - 4. 지역과학기술인 양성을 위한 교육의 질적 강화방안 수립
 - 5.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활동 지원
 - 6. 지역과학기술인의 지역 내 취업·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 7.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지역 유치 및 정착을 위한 지원
 - 8.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 및 산업 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과학기술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 대학 간공동교육과정, 연수, 학생 및 교원의 교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는 신규 연구개발인력 채용 시 소재지의 시·도에 소재한 대학의 학생이나 졸업생을 우대하여 채용하는 등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지역 인재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한 지역공공연구기관과 지역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하거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지역과학기술인 정주여건의 개선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이 지역으로 정착하여 지역과학기술혁신활동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과학기술인을 위한 주거·교육·문화생활에 필요한 정주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과학기술인의 정주여건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
 - 2. 「근로복지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근로자주택공급제도,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같은 법 제2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 3.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 4.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24조제2호에 따른 공동숙박시설 의 지원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중소기업 장기 재직자의 주택 입주 지원
 - 5. 그 밖에 지역과학기술인의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향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22조(지역과학기술 교육·문화 확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및 주민들을 위한 과학기술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주민과 지역 사회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제23조(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역문제 해결) ① 시·도지사는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시·도가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여 추진할 수 있다.
 - ④ 정부는 시·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 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4조(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체계 구축 등) ①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역과학기술 관련 정책을 효 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과학기술혁신에 필요한 지역과학기술정보 생산 및 유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정보 등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 등에 관한 통계 및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통계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기관·단체 등(이하 이 조에서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이라 한다)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이에 따라야 한다.
- ③ 시·도지사는 지역의 산업 진흥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학기술을 발굴하고, 이를 정책 및 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역과학기술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 ④ 시·도지사는 지역과학기술 관련 지식·정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⑤ 제4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 보의 생산·유통·관리 및 활용체계와 연계되어야 한다.
- ⑥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관련 기업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⑦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 제3항에 따른 수요조사, 제4항에 따른 지역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25조(지역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① 시·도지사는 지역과학 기술혁신에 지장을 초래하는 불필요한 규제를 점검·발굴하여 이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 하여 지역과학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 을 정비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등

- 제2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문 능력과 인력을 갖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가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0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임원

및 직원, 제11조에 따른 정책연구센터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 제24조제6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